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보도용: 2012년 12월 18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에게 세금 경감과 지원을 발표하다

주정부 세금부서, 납세지연신고를 커버하고 기업체를 지원하는 조치를 채택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직도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복구 과정에 있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일련의 세금 경감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가 소개하는 새로운 조치에 따라 폭풍 피해를 입은 뉴욕주민은 세금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납세 신고를 제 때 한 것으로 간주되고, 복구 활동을 돕기 위해 임시로 뉴욕으로 이동해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여러 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고용주들에게는 허리케인 Sandy 구조 활동에 기부한 휴가를 금액으로 계산해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Sandy의 엄청난 파괴로 아직까지 재건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세금 지원 및 경감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과 같은 복구 시기에 피해 주민과 기업체 및 뉴욕에 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경감 조치 수혜 자격에 대한 지침 및 상세 내용은주정부 세금부서 의 허리케인 Sandy 세금 경감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 지연 신고

세무국은 허리케인 Sandy로 지연된 납세 신고 및 지불을 제 때에 한 것으로 처리하고, 벌금 및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입니다.

폭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이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문서정리원이가 이들의 신고서를 입력할 때 판매세, 고속도로사용세, MCTMT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Mobility Tax), 원천징수세(Form NYS-45)의 신고가 지연 또는 완료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문서정리원은 신고서 상단에 커다란 글자로 "Hurricane Sandy"라고 기입하만 하면 됩니다.

임시 대피

폭풍으로 인해 임시로 뉴욕주로 대피하는 기업체 및 개인은 법인세, 원천징수세 및 개인소득세를 평가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뉴욕에 소재한 기업 연계 및/또는 직원들을 기반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휴가 기부

고용주가 승인된 휴가 기부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우 직원들은 휴가, 병가 또는 개인적인 휴가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허리케인 Sandy 구조 활동에 참가하는 유자격 세금 면제 기관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소득세를 목적으로 이러한 현금 지급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책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현금 지급에 적용되며, IRS(IRS Notice 2012-69)가 발행한 연방 법규에 따라 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

- www.tax.ny.gov를 방문하십시오.
- Twitter및 YouTube에서 세무국(Tax Department)를 팔로우 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